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 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서가람 (044-203-5640)	담당자	박윤주 주무관(044-203-5646)
담당과장	관세청 교역협력과 이민근 (042-481-7960)	담당자	허범석 사무관(042-481-7902)

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원활화협정 2.22 발효

- WTO 회원국의 통관절차 효율화로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기대 -

□ 세계무역기구(WTO) **무역원활화협정***이 164개 회원국 중 2/3이상에 해당하는 112개국이 수락해 **'7. 2. 22.(수)**(제네바시간 오후 1시경)**에 발효**됐다.

* 「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」(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)

○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은 '13.12월 제9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타결했고, '14. 11월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.

○ 이후, 각 회원국은 동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우리나라는 '15. 7. 30.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하였고, '17.2.22 르완다, 오만, 차드,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기탁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*되었다.

*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 제10.3조에 따라 WTO 회원국 2/3(110개국)가 수락한 때 수락회원국에 대해 발효되며,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은 수락한 때 발효

□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, 통관절차의 간소화,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, 개발도상국 우대 등을 규정해,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었다.

○ 무역원활화협정은 '95년 세계무역기구(WTO)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며, 특히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한 점에서 세계무역기구 역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

□ 세계무역기구(WTO)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.3%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, 수출 1조불 증가,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0.54% 증가를 전망했다.

*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은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3.34%~6.49% 늘어날 것으로 분석(2013)

* 국제상의(ICC)와 피터슨연구소(PIIE)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1조불 이상의 수출 증가와 2천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전망(2013)

*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한 잠재적 무역비용 감소를 저소득국 14.5%, 중하소득국 15.5%, 중상소득국 13.7%, OECD국가 11.1%로 전망(2015)

○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로 세계무역기구(WTO) 회원국,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특히,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,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,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, 신선식품의 통관 및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무역원활화협정은 수출입 관련 수수료 등을 실비에 한정(제6.2조), 자국 영역 내 공통 세관절차 및 통일된 서류요건 적용(제10.7조),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요청 및 재심 요청(제3조), 부패성 상품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(제7.9조) 등을 규정

□ 정부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 선진 통관행정의 강점 분야*를 위주로 개발도상국의 관세당국자를 초청해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능력배양과 현지 기술지원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.

* '16년 10월 제7차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WTO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한국 통관행정 및 무역원활화협정 이행노력을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평가

□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 국·영문본 및 해설서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관련 홈페이지 및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

○ www.fta.go.kr → 통상정책마당 → WTO 개관 → 협정문 및 양허표 →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국문 및 영문

○ www.customs.go.kr → 뉴스/소식 → 국제기구현황 및 활동 → 세계무역기구(WTO) →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및 요약본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서가람 과장(☎044-203-5640), 관세청 교역협력과 이민근 과장(☎042-481-796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WTO 「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」의 기대 효과

1. 세계무역기구 (WTO, 「2015 세계 무역보고서」, 2015)

□ 전 세계 **무역비용 감소** 효과는 평균 **14.3%**로 나타남

○ **지역별로는 아프리카**(16.5%), **소득그룹별로는 최빈개도국**(16.7%)의 경우 무역 비용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
* 지역별 : 북미 11%, 유럽 11.5%, 아시아 13.5%, 중남미 15.5%, 아프리카 16.5%
* 소득그룹별 : 선진국 11%, G-20 개도국 13%, 기타 개도국 15%, 최빈개도국 16.7%

○ 수입시간은 약 1.5일(47%), 수출시간은 약 2일(91%) 감소 기대

□ **수출증대**는 **약 1조불, GDP 성장률**은 **약 0.54%**까지 기대

*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(CGE) 모형 분석을 통해 전 세계 수출증대는 7,500억불~1조불, GDP 성장률은 0.34%~0.54%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
* 중력모형은 수출증대가 1.1조불~3.6조불까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

□ 개도국·최빈개도국의 경우 수출 다변화, GVC(Global Value Chain) 편입 확대,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, FDI 유치 확대, 조세수입 증가, 부패방지 효과 전망

2. 경제개발협력기구 (OECD, 「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: 무역비용의 잠정적 효과」, 2015)

□ 무역원활화협정의 제한적 이행과 완전한 이행*의 **무역비용 감소**는 각각 저소득국 12.6%, 16.5%, 중저소득국 13.7%, 17.4%, 중상소득국 12.8%, 14.6%, OECD 국가 10.4%, 11.8%로 나타남

* 제한적 이행은 협정의 의무규정(예: 제1.1조 통관관련 규정의 공표)만 이행, 완전한 이행은 노력조항(예: 제10.4조 싱글윈도우 설치)도 모두 이행함을 의미

3. 국제상의 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(ICC · PIIE, 「세계무역의제의 영향」, 2013)

□ 선진국은 1,800만개, 개도국은 3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**2천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**

□ 개도국 수출은 5,700억불 증가, 선진국 수출은 4,750억불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**1조불 이상 수출증대 전망**

참고2 WTO 「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」의 내용

분류	조항	주요 내용
GATT 제10조 (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) 개선 및 명확화	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 가능성	수출입 관련 정보의 공표,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, 질의처 설치·유지 등
	제2조 의견제시 기회, 발효 전 정보 및 협의	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제공, 이해당사자간 협의 기회 제공 등
	제3조 사전심사	품목분류, 원산지 등에 대해 사전심사 요청,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재심 요청 등
	제4조 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	세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·행정적 불복 청구권 보장
	제5조 공정성,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	국경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는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실시, 수입 신고 된 상품에 대한 시험 절차 등
GATT 제8조 (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) 개선 및 명확화	제6조 수출입 관련 수수료, 부과금, 벌금에 대한 규율	수출입 관련 수수료, 부과금 관련 사항을 공표하고 비용은 대략적 실비에 한정
	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	도착 전 처리, 전자적 지급, 반출과 관세 등 부과금의 최종 결정의 분리, 위험관리, 통관 후 심사, 평균 반출시간의 수립 및 공표,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, 특송화물, 부패성 상품 관련 무역원활화 조치
	제8조 국경 기관 협력	무역원활화를 위한 국내 및 국가의 국경 기관 간 협력
	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	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허용
	제10조 수입,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	형식·서류 요건의 간소화, 종이·전자 사본의 수용, 형식·절차의 국제표준 사용, 싱글윈도우 설치, 품목분류·관세평가 관련 선적 전 검사 금지, 관세사의 의무사용 금지, 공통 세관절차 및 통일된 서류요건 적용, 위생·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부된 상품의 반송, 역내·역외 가공 상품의 세금감면 또는 환급 허용
GATT 제5조 (통과의 자유) 개선 및 명확화	제11조 통과의 자유	회원국 통과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, 비용은 대략적 실비에 한정, 회원국 간 협력
신규도입 (세관협력)	제12조 세관 협력	세관 간 수출입신고의 진위·정확성 확인을 위한 정보 교환 절차, 상호주의에 의한 정보 교환, 요청한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 등